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의안 번호	2441
----------	------

제의연월일 : 2025. 6. 30.

제 의 : 의 장

1. 제의이유

예산안·결산, 기금운영 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선임기간: 선임된 날부터 2026. 6. 30.까지

나. 위원정수: 5명

다. 위원명단: 이명녀 의원, 문기호 의원, 김태욱 의원,
정재환 의원, 홍영진 의원

3. 근거법규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제3항

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9조

근거법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」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